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해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거리 확대 〉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2787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가해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거리 확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13.
3.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접근금지 조치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미적용 대상자에 대한 청구인바,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등에 100m 이내로 가까이 접근할 경우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조치이행을 확보하게 됨.

그런데 100m는 성인이 단시간에 뛰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로 보기 어려워,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근금지 거리를 800미터 이내로 상향하여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제3호).

Ⅲ. 검토의견

1. 가해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거리 확대

개정안은 성범죄자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접근이 금지되는 거리를 현행 100미터 이내에서 800미터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u>100미터</u>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3. ----- ----- <u>800미터</u> ----- ----- -----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1조 및 제42조¹⁾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²⁾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³⁾는 제외) 피해아동·청소년의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2.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5.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2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보호처분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제41조 각 호의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연장기간은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보호처분 청구사건의 판결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3)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데,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가시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적으로 위치 확인 및 이동경로 탐지가 가능함.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판결로 선고할 수 있음.

그런데 접근금지 거리 100미터는 성인이 단시간에 뛰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짧은 거리로, 경찰이 현장 출동을 하기까지 아동·청소년이 가해자로부터 도주하기 어려워 접근금지 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접근금지 거리를 100미터 이내에서 800미터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가해자 및 가해자의 대리인이 피해자의 생활공간이나 활동공간에 접근하여 피해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위해 및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접근금지 조치는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근거리에서 접근할 시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 접근금지를 담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 ⑧ (생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최종심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여부> (단위: 명(%))

범죄유형	최종심 전자장치부착명령 여부		계
	그렇다	아니다	
○ 성폭력범죄	63(3.5)	1,712(96.5)	1,775
- 강간	27(3.9)	672(96.1)	699
- 유사강간	8(5.4)	139(94.6)	147
- 강제추행	28(3.0)	901(97.0)	929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2024.5.10., 131쪽 참고

보할 수 있는데 800미터는 가시거리로 보기 어려워 접근금지 조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임시조치의 일환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⁴⁾에서 유사 입법례와의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접근금지조치는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성범죄자에 대해 청구되는 조치로서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근거리에 접근한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한 경우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 접근 금지를 확실히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800미터는 가시거리로 보기 어려워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고,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톱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톱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톱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 대리인 또는 스톱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톱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